

#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-17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 1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·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로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「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」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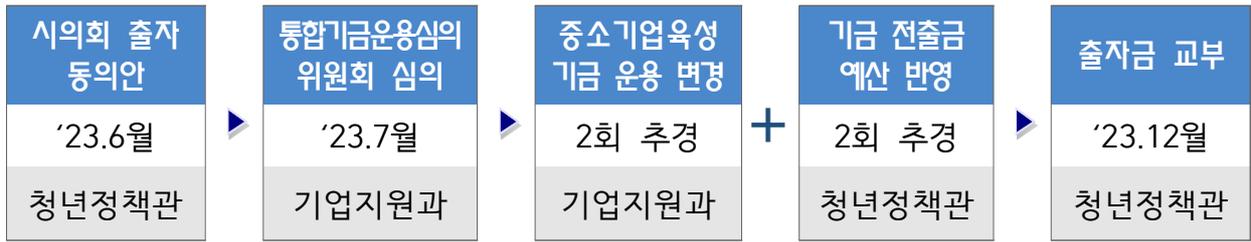
## 법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-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의2, 제10조  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## 주요내용

- 추진방향
  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금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 운용
  - 기업 투자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원활한 회수로 선순환 구조 마련
  -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출자개요
  - 출자대상 : 한국모태펀드(청년창업, 창업초기, 스케일업·중견도약 분야) 출자사업 선정된 벤처투자조합
  - 출자금액 : 20억원(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)
  - 출자방법 : 정부(모태펀드)가 공모·선정한 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
  - 출자시기 : 2023년 12월 예정

『중소기업육성기금』 출자 흐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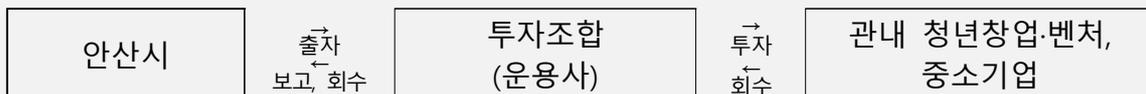
○ 출자자 구성 (안)

구분	업무집행조합원(GP) <sup>1)</sup>	유한책임조합원(LP) <sup>2)</sup>	특별조합원
책임 권한	(공통) 의결권, 재산분할권, 기타 법률 및 규약에 규정한 권리		
	·조합재산의 관리, 운영 ·투자대상의 선정 및 투자 ·투자업체의 육성, 지원 ·조합재산의 배분, 회수 ·조합의 회계 및 채무의 책임	·조합채무에 대한 출자금 범위 내에 책임 ·재산현황,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·투자기업 및 사업현황 등 필요한 사항 보고요구	·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, 자금집행, 계약 등에 대한 총괄 감사, 감독
출자금 (총250억)	조합 약정총액의 1% 이상	안산시 20억원 민간투자 130억원	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

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
- 사업목적 : 관내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성장 유망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
- 조성규모 : 250억원(모태펀드 100, 시 20, 민간 130)
- 조성형태 : 중기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형(모태펀드+GP+LP)
- 조성재원 : 국비(모태펀드), 시비(중소기업육성기금), 민간투자금(민간투자자 등)
- 운용기간 : 2023. ~ 2031. (8년, 투자4년+회수4년)
- 투자대상 : 청년창업·벤처기업, 중소기업
- 투자조건 : 안산 소재(이전)기업에 안산시 출자액(20억원)의 2배수 이상 투자
- 운용주체 : 펀드운용사[(정부)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운용사]

<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추진 체계 >



1) 업무집행조합원(GP) :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, 펀드의 투자/회수 의사결정 등 운영 주체  
 2) 유한책임조합원(LP) :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(개인, 법인, 기관 등)로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2】

※ 비용추계서 첨부

방침결정문(사업계획서) : 【붙임 3】